

의안번호	2219586
의 퇴 인	이정헌의원
회 답 일	2026. 7. 29.
추계번호	26B315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중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또는 출입구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현행법¹⁾은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해 점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제1항²⁾에 따른 편의시설 중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또는 출입구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

1) 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또는 출입구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서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의 대상 시설별로 장애인등 편의시설 중 출입구 접근로 또는 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 참고로, 해당 대상시설 중 일부 시설의 경우에는 일정 면적 및 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하여만 장애인등 편의시설(출입구 접근로, 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표 1] 장애인등 편의시설(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 설치 대상 시설 현황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대상시설		편의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제1종 근린생활 시설	수퍼마켓·일용품 등의 소매점, 이용원·미용원·목욕장	의무	의무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의무	의무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대피소	의무	의무
	공중화장실	의무	의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500제곱미터 미만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지역아동센터	의무	의무
제2종 근린생활 시설	일반음식점(3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의무	의무
	일반음식점(5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공연장	의무	의무
	안마시술소	의무	의무
	장 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의무	의무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의무	의무
	독서실, 기원	의무	의무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및 관람장	의무	의무
	집회장	의무	의무
	전시장, 동·식물원	의무	의무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을 말하며, 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판매시설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의료시설	병원·격리병원	의무	의무

대상시설		편의시설	매개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교육연구 시설	학교(특수학교를 포함하며, 유치원은 제외한다)		의무	의무
	유치원		의무	의무
	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도서관(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노유자 시설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의무	의무
	노인복지시설(경로당을 포함한다)		의무	의무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의무	의무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의무	의무
운동시설(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의무	의무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 공단 및 그 지사(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의무	의무
	관광숙박시설		의무	의무
공 장			의무	의무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		의무	의무
	운전학원		의무	의무
방송통신 시설	방송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교정시설	교도소·구치소		의무	의무
묘지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의무	의무
관광휴게 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휴게소		의무	의무
장례식장			의무	의무

□ 공동주택

대상시설	편의시설		비고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아파트	의무	의무	
연립주택	의무	의무	세대 수가 10세대 이상만 해당
다세대주택	의무	의무	세대 수가 10세대 이상만 해당
기숙사	의무	의무	기숙사가 2동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장애인용 침실이 설치된 동에만 적용한다. 다만, 장애인용 침실수는 전체 건축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반 침실의 경우 출입구(문)는 권장사항임

자료: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의 내용 중 해당 사항 발췌

- 개정안은 장애인등 편의시설 관련 감면대상에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아닌 ‘일반 시설에 설치된 장애인등 편의시설(출입구 접근로, 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도로 점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액이 확대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이 감소될 수 있음

[표 2]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장애인등 편의시설(출입구 접근로, 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 감면대상 비교

현행	개정안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 ³⁾ ’ 중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또는 출입구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장애인등 편의시설 ⁴⁾ 중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또는 출입구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개정안에 따른 도로 점용료 감면액 증가분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등 편의시설(출입구 접근로, 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에 대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 현황 등의 정보가 필요하나,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및 통계가 부재하며, 향후 해당 시설에 대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 규모 역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개정안 시행으로 인한 도로 점용료 감면액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간 국토관리청 및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도로 중 장애인등 편의시설(출입구 접근로, 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에 대한 도로 점용허가 건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장애인등 편의시설에 대한 도로 점용허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및 통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임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 참고로, 2022~2024년 도로 점용료 및 감면액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3] 도로 점용료 및 감면액 현황: 2022~2024년

(단위: 백만원)

도로관리청	2022		2023		2024	
	점용료 수입	감면액	점용료 수입	감면액	점용료 수입	감면액
국토관리청	15,366	13,398	15,868	13,222	15,549	12,731
한국도로공사	1,180	1,659	1,215	1,793	1,104	796

주: 1)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료 수입 및 감면액 현황은 통계 등 관련 자료가 없어 미포함함
 2) 감면액은 현행법 제68조에 따른 감면대상(비영리사업, 재난 등 사유로 점용목적 달성 불가, 국민경제에 중대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주택·준주택 출입 통행로 등)별 감면액의 합계 금액임
 자료: 국토교통부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